

#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 . . 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금면(可金面)은 가흥면(可興面)+금천면(金遷面)으로 면명칭의 역사적·지역적 대표성 결여
- 탄금호를 사이에 두고 좌측은 가금면, 우측은 금가면으로 시민을 물론 외지인들에게 혼동을 유발
- 또한 가금면은 가금(家禽 : 알이나 고기를 먹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)을 연상시킴
- 기업도시,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 및 충주에코폴리스, 탄금호 수변 레포츠타운 조성과 가금~칠금간/북충주IC~가금간 지방도 확포장 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현황에 걸맞는 신명칭으로 개명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충주시 가금면(可金面)을 중앙탑면(中央塔面)으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14,941천원 (2014년 당초예산 반영요구)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3.10.25 ~ 11.14)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완료

(3) 부패영향평가 : 심사완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완료

## **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읍면명 란의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한다.

### 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주시 읍·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3번 중 “가금”을 “중앙탑”으로 각각 한다.

②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표 중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각각 한다.

③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 “가금”을 “중앙탑”으로 각각 한다.

④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한다.

⑤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한다.

⑥ 충주시 농·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치·종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한다.

⑦ 충주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읍면명 란과 별표 3의 읍·면 란 중 “가금면”을 “중앙탑면”으로 각각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충주시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읍면명</th><th>리명칭</th><th>구역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가금면</u></td><td>(생</td><td>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읍면명	리명칭	구역	<u>가금면</u>	(생	략)	<p>[별표 2]</p> <p>충주시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읍면명</th><th>리명칭</th><th>구역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중앙탑면</u></td><td>(현행과</td><td>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읍면명	리명칭	구역	<u>중앙탑면</u>	(현행과	같음)
읍면명	리명칭	구역												
<u>가금면</u>	(생	략)												
읍면명	리명칭	구역												
<u>중앙탑면</u>	(현행과	같음)						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